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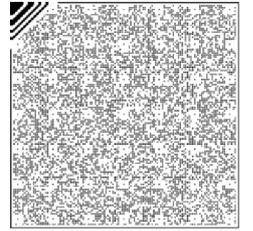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의료기관 개설자
(경유)

제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 관련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·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. 2. 7일 시행됩니다.

※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서 마약류 마취제인 '프로포폴' 지정 추진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, `24.10.31)
3.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취급내역 중 귀 의료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·투약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.
 - 마약류는 중독성·의존성을 유발하여 신체적·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,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·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 -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·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, 감독에 나서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.
4. 아울러, 귀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·의원 전산 부서 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문화 형성에도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주무관	이은희	사무관	김현수	마약관리과장	전결 2025. 1. 9. 김은주
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마약관리과-176 (2025. 1. 9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 / mfds.go.kr
처 행정동 301호

전화번호 043-719-2894 팩스번호 043-719-2890 / leh0108@korea.kr / 비공개(5)

힘내라 대한민국!